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고,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관세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

관세사 개업신고 관련 조문 및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7. ~ 1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”을 “법 제7조제1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등록한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5 전단 중 “및 제17조를 준용한다.”를 “을 준용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5조제6항 전단 중 “및 제17조를 준용한다.”를 “를 준용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 (다만,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은 연 1회에 한한다.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개업신고)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업신고는 관세사회를 거쳐 관세사사무소[관세법인 또는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말하며,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(이하 “통관취급법인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관세사의 경우에는 통관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.	<삭 제>
②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개업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세사회를 거쳐 관세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
제22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신고후 15일 이내에 법 제1	제22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등록한 ----- -----

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1인당 1천만원상당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조의5(관세법인에 대한 준용 규정)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·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7조 중 “관세사사무소”는 “주사무소”로 본다.

제25조(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)

① ~ ⑤ (생략)

⑥ 통관취급법인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7조 중 “관세사사무소”를 “본사”로 본다.

⑦ (생략)

제30조(업무의 위탁)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사회에 위탁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5(관세법인에 대한 준용 규정) -----
----- 을 준용한다.

<후단 삭제>

제25조(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)
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를
준용한다. <후단 삭제>

⑦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

3. · 4. (생략) ② (생략)	<u>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(다만,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은 연 1회에 한한다.)</u> 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18